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적발
- 11월부터는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2년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 적발('19.9월~'21년 수급자 대상)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

■ (적발)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 반환명령액 36억2천만원

유형	부정수급 방식	부정 수급자	부정 수급액	반환 명령액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	근무기간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업상태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31명	3억 4천만원	6억 8천만원
실업인정 IP주소 동일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업상태로 거짓 신고하고 사업장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부정수급	249명	15억 7천만원	29억 4천만원

\* 대지급금: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지급, 대지급금 지급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 >

- ① (서울 거주 ㄱ씨) ㄱ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 ② (대전 거주 ㄴ씨) ㄴ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 실업인정 IP주소 동일자 >

- ③ (경남 거주 ㄸ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 ④ (전북 거주 ㄹ씨)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ㅇ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담당자	사무관	고복현 (044-202-7349)